

회의자료 94-09

입양특례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 요약보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입양특례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 요약보고 -

일 시: 1994년 6월 10일 (금) 14:00 - 18:00

장 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참석자: 원장, 흥문식 인구연구부장, 공세권 연구위원, 정기원 연구위원

배태순(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연(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주수(전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명숙(보건사회부 가정복지심의관)

이홍룡(법원행정처 법전과장)

조강환(동아일보 논설위원)

고학용(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석연(변호사)

강기원(변호사)

한봉희(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배경숙(인하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정은(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김도미니카(성가정입양원 원장)

김득린(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회장)

소화영(홀트아동복지회 사회사업국장)

김종우(입양가정의 어머니)

연경현	부 장	부원장	원 장	결
정기원	W	AS	W	재

입양특례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 요약 -

<연하청원장 개회사>

- 입양현황: 국외 72% 국내 28%, 고아수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받고 있음.
그러나 1993년 3,444명 입양중 국내 1,154명(34%) 국외 나머지(66%)로 국내입양 증가추세.
- 입양특례법의 개정에 관한 국내 학계와 법조계등의 여러 분야의 고견희망.

<좌장 홍문식 연구위원>

- 1994년 UN 가정의 해, 5월은 가정의 달이나 최근 패륜범죄증가에 대한 소식많음.
- 가족간의 사랑, 화목없이 진정한 사회구현이 불가능하므로 고아와 유기아의 보호·
입양책을 마련하는 계기 촉구.

<제1주제 입양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 배태순 경남대 교수>

<토론자: 이재연 속명여대 교수>

1. 내용상의 이의점 제기:

- 국내입양수의 감소를 입양신청자의 감소로 해석하는 것은 모순(실제로 입양신청자
가 늘고 있음과 상반됨)
-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시의 비용문제 거론이 누락되었음.

2. 발표내용의 요약 및 제언:

- 현 국내입양의 저해요인이 폐쇄적 비밀입양과 불법개인입양으로 대별됨.
- 개선안으로 개방입양을 찬성하지만 방법론상의 문제점이 야기됨.
- 부모권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입양을 선호하므로 장기적으로 부로에
대한 근원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 부로됨에 대한 등기점검 및 이해가 필요함.
부로가 될려는 태도(종교적, 이타심, 국제화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선수되어야
함. 입양이 가계계승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격완성의 일부로 보아야
함. 따라서 종합적 차원에서 부모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 및 훈련
필요함.

- 부모교육을 통하여 미혼모 (입양대상아동출산의 80%차지) 방지 시사.
- 국내입양 실시집단, 고려집단, 미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의식·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현황 및 문제점 발견 필요.

<제2주제 입양특례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 정기원 보사연 연구위원>

<토론자: 김주수 전 연세대 교수>

1. 국내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혈통주의 때문에 친자에 대한 열망으로 인하여 친생자 허위신고(입양아의 98%)를 통한 입양이 주가 됨. 따라서 호적제도의 공신력 저하, 생부모의 확인불능, 파양의 경우 무자격자 양산등의 문제 도출.
- 호적법 개정을 통하여 양자신고와 친생자신고가 둘다 가능하도록 적법적인 조치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입양시 친생자로 등재하나 생부모 추적가능함). 파양불가능하도록 조처하고, 허위 출생신고는 무효로 판결하여 비밀입양 봉쇄하여야 함.
- 개정안 제10조 6항(입양시 새로운 출생신고서 작성)은 입양신고 절차로써 호적법에서 규정해야 하므로 결정을 법계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
- 제5조(양친자격심사)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관여 필요함. 입양기관에서의 증명발부전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선수되어야 함 (미국과 일본은 정부기관을 통하여 심사하고 있음).
- 양부모와 양자간의 조화를 위하여 시험양육기간(약 6개월 정도)을 입양기관측에서 살펴본 후 입양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한 입양가능 시사.
- 현재 협의파양은 불가능하고 재판파양만 가능함. 법적으로는 학대·유기외에 파양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제15조의 파양사유가 너무 광범위하고 뚜렷하지 않으므로 문제발생 우려. 따라서 구체적인 파양사유 명시가 중요함.
- 제16조는 취소규정으로 전환이 바람직함. 양자가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을 때 생부모와의 관계가 법률상 종료된 것임. 그러나 파양으로 인하여 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취소가 되어 원상복귀됨.

<조강환 동아일보 논설위원>

1. 문제점 및 원인 제시:

- 30년간 저해된 한국 입양사업의 현실에 통감함.
- 현재 국내입양수 감소하고 있고 입양가능한 건강한 신생아만 비밀입양하고 있음. 연장아·장애아·지체아의 입양이 진정한 입양의 발전이라고 생각함.

- 가족이기주의, 혈연체 및 공동체의식이 저해요인이라고 생각됨.
- 입양보조금 지급문제:
 - 의료보장, 교육문제등 각 분야에서 재정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처의 혀락에 대한 의구심 있음.

2.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기:

- 가치관 개혁:
 - 본질적인 개선책은 돈이 아니라 사회에서 입양가정은 존경받는 가정으로 인식되도록, 즉 사회에서 “입양”은 “존경”으로 간주되도록 언론, 사회, 정부의 지원으로 물리적, 정신적 혜택을 부여하여 가치관 개혁 유도.
- 입양가정 지원제도: 각종 특혜 부여
 - 주택구입 및 이주시(당첨권 우선 부여)
 - 대학입학시 우선권
 - 기업체 사원 채용시 우선권
 - 교통기관 이용료 삭감(50% 인하)
 - 소득세·취득세등의 세제 혜택
 - 은행융자 우선권 및 범칙금 면제 등.
- 위탁보호 가정제도 활성화:
 - 미국의 경우 장애아 입양가정의 70%가 위탁가정임.
 - 광주, 인천의 위탁가정 시범사업(37개 가정과 60명) 있음.
 - 영구입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단기 위탁보호 가정제도를 통하여 양부모와 아동간의 인정적 연결을 확보하면 입양이 용이할 것임.
- 조기교육 실시:
 - 성교육·도덕성교육이 우선되고 있어서 입양에 대한 조기교육은 실현불가능함.
 - 교육의 실시와 효과 발효까지 수십년간 소요되므로 입양에 대해 교육의 실시는 의문스러움.
 - 입양아동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책속에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음.
- 국외입양 지속:
 - 국내입양이 불가능한 아동(흔혈아 및 장애아등)은 해외입양 계속하도록 주장함.
 - 1996년부터 국외입양글지 시책증 장애아, 흔혈아제외 사항은 국가의 자존심과 고태의 선비정신을 무시한 전근대적인 보사행정임을 질타함.
 - 체계이론에 입각하여 입양을 인간본연의 자세로 보는 시각 필요.
 - 민족, 국가, 영토에 대한 국수적인 사고를 배격하고 국경, 민족에 구애받지 말아야 함. 계속적인 해외입양을 재고해야 함.
- 입양특례법 조항:
 - 호적에 등재시 양부모의 성으로 친자로 해야 함.
 - 불법허위신고는 근절해야 하므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함.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1. 입양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의점 제기:

- 한국은 혈연중심의 사회이므로 서구사회의 합리적 제도가 받아되기 어려운 상황하에 입양가정의 목적이나 요구를 무시하고 서구제도를 몰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비 현실적임.
- 제도적 입양은 당사자의 의사가 유린되고 득실되기 쉬움. 입양을 개방화·공식화할 경우 개개 가정의 평화와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게 됨.
- 현실적으로 개인입양을 인정하면서 세제혜택등의 특혜를 통하여나 해서 점차 제도적 입양으로 유도하는 것이 국내입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국외입양금지 정부시책에 대한 반견:

- 1989년에 발표된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씻겠다는 국내입양위주 전환시책은 감상적·맹목적인 발상임. 현 국제화(globalization)에 역행하고 있음.
- 국내수요가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외입양금지책은 무의미함.
- 한국의 인구문제를 고려하여 볼 때 아동수출도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함.
- 국내입양보다 국외입양의 경우 좋은 결과가 관찰됨 (제도입양이므로 생부모 방문 등의 미담 있음).
- 따라서 국내 및 국외 입양의 양제도 존립을 주장함.

3. 해외입양의 사후 보호체계 강화 역점:

- 해외 입양아들에 대한 사후관찰·보호체제를 강화하여 문화,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지속해야 함.

<이석연 변호사>

1. 합리적인 개정법 촉구:

-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사상 및 정서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 강조. 혈통주의가 바탕이 되어 비밀입양·사적입양이 보편화 되어 있음.
- 현 개정법은 혈통위주의 사적인 입양차원과 기아·장애아의 사회보장을 고려하는 제도적 입양차원중에서 후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됨.
- “알 권리”가 있고 친생자 확인을 통해 비밀이 영원히 감추어 질수 없음.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입양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됨.
- 전통적인 입양의식구조의 변화로 국내입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미혼모로 인한 출산아동의 증가가 예견되므로 미혼모·장애아를 위한 처리문제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대처해 주기를 희망함.

2. 해외입양제도 고수:

- 입양아동의 2/3가 해외입양이고 이 가운데 45%가 장애아와 혼혈아동임.
- 국가의 체면유지와 아동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회복 간에 선택적 사항으로 생각됨.
한국과 같은 편견과 차별이 심한 나라에서 편견과 차별이 적은 나라로 입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해외입양시 소요 수수료는 막대한 비용(수입)으로 짐작됨.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해외입양지향을 촉구함.

〈강기원 변호사〉

1. 친자신고문제:

- 친자로 신고하는 문제에 대해 불찬성함. 한국의 호적제도는 사실에 입각하여 기재하는 원칙임. 결국 진실은 노출되므로, 친생자로 등재하는 것이 범법이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사실의 명확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자문제:
 - “서자”로 신고하면 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본처 자식으로 등록하고 있음.
 - 재산관계 때문에 적모(본처)의 소송으로서 서자사실이 노출되는 사건이 다수임.
- 친자 혹은 적자와 서자에 대한 차별대우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면 차별정서를 마련해 주는 즉 친자로 등재하게 하는 합법적 제도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
- 법의 사실관계를 흐리게 하는 양자의 친자등록 방법론을 반대함.

2. 양친자격문제:

-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입양아 복지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및 물질적 급부가 용이하다는 배경에서 출발한다고 이해하고 있음. 또 입양이 악용되어 아동의 노역이나 성적학대 방지를 위하여 양친존재 조건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One-parent family(결손가정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음)의 증가 추세에 있음. 더구나 편부모의 가정에서도 자식성장에 무리없음.
- 따라서 부모존재를 강조하는 원칙을 탈피할 필요성이 시사됨.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에서 “미혼자도 가능하다”로 바뀌어야 함.
- 실상황에서는 편부모가정에서 성폭력건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양부모존재 가정에서 성폭력 발생하고 있음.

3. 입양관련 교육:

- 교육은 필요하나 입양자체에 대해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주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함. “왜 결혼하기를 원하는가”, “자녀를 왜 들 것인가”라는 전제에서 성, 결혼, 자녀의 필요성, 자녀를 기르는 이유등을 교과과정에 삽입하는 것을 희망함.

〈한봉희 동국대 교수〉

1. 입양특례법의 조항에 대한 보완점 지적:

- 개정안의 기본정신은 현재의 친자법에 의거한 아동의 복리증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아동의 복리구현을 위하여 전통적 계약입양에서 기관입양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생부모와 혈연관계를 무시해서는 안됨. 서구 각국의 제도는 완전양자제도로 흐르고 있으므로 완전(특별)양자제도의 도입을 주장함. 친자법에 의거한 기관입양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UN 아동의 권리조약 채택 측면:

- 제28조 2항(복지시책)은 입양법의 획기적인 조항으로 사료됨.
- 1989년 12월 UN에서 “아동의 권리조약” 채택하였고 1991년 한국에서 조약을 비준하였음. 비준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음.
- 아동특례법 개정시 UN 아동의 권리조약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 조항을 부각 사킬 것.

3. 양친의 자격 및 연령문제:

- 1991년 통계의 의하면 평균결혼연령 남자 28세 여자 26세이므로 입양가능 연령인 25세는 지나치게 이트므로 35세로 수정해야 함.
- 입양연령상 45세로 정한 상한선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시 됨.
- 제8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의 의사반영 연령인 15세에 대해서도 의문시 됨. 그보다 어려도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므로 10세 정도로 낮추는 것을 제안함.

4. 입양에 대한 사회적 풍토 조성:

- 혈연주의 극복을 위하여 사회적 등기를 부여해야 함.

<배경숙 인하대 교수>

1. 파양문제:

- 현재 양자를 친자로 등재하고 생가와는 단절한 후 집안사정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파양은 불가능하므로 아동의 정서적 복지문제가 대두됨.

2. 국외입양아의 복지문제:

-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등 국외입양아의 비참한 생활 보도되고 있음. 세계가족법회 의석상에 해외입양의 문제점 거론되었음.
- 96년부터 국내입양을 찬성함. 국내입양이 일단계적인 처사이지만 대책 마련에 부심해야 할 것임.
- 국민의 의식구조 개혁을 주장함. “괜찮은 아동”만이 아니라 아동복지차원에서 “장애아와 지체아”의 입양도 촉구함.

<박정은 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1. 국내입양 저해요인:

- 국내입양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여성의 삶-임신, 출산, 양육의 기능에 대한 근원적 등기를 살펴보아야 함.
- 여성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공동체적인 지역사회 의식을 촉구함.
- 아동의 사회복지를 위한 것이 목표여야 함.

2. 해외입양 사후보고·감독제도:

- 6개월 정도의 사후보고기간 즉 시험기간을 두어야 함.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에서 관리·감독해야 함.
- 사전조사의 책임강조함. 입양기관, 병원, 조산소의 책임임으로 기록을 확인해야 함.
- 국내입양에 대해서도 정부의 시설지원보다 지도·감독권을 강조함. 정부의 비대화로 인하여 문제점이 노출된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원은 가능한한 기업 및 민간부문에게로 들려야 할 것임.
- 위탁보호 즉 대리가정을 제공해야 함.

3. 출산증명서:

- 호적입적 때문에 반드시 출생신고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불법 허위 출생신고가 다발함. 출산신고서 발급 허용기관을 조산소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의함.
- 불법신고에 대한 법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함.

4. 법률개정조향:

- 제8조 3항의 친족범위는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음.
- 전원에 대한 지불주체를 고려할 것.

<공세권 보사연 연구위원>

- 개개 가정이나 가족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함. 가족해체문제에 대한 예방책이 선행되어야 하겠음.
- 자녀의 효용성 감퇴, 가족파괴현상으로 인하여 유기아 증가하고 있음. 유기아동이 가정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유기아에 대한 대책이 절실힘.
 - 대리부모제도 도입
 - 입양부모 심사제도 강화 역점.

<김도미니카 성가정입양원 원장>

- 서구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은 비현실적임. 한국인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한 배경이 엿보임.
- 가정위탁제도:
 - 상기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함. 실제로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이 전혀 없어 양부모가 일반의료비를 전액부담해야 함. 따라서 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할 경우 의료보험가입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함.
- 국내입양 발전저해라는 표현에서 “발전”이라는 명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자 함. 30년간 발전이 없었던 이유를 공식적인 데이터를 기준한 것인지 사적의견인지 물겠음.
- 출생증명서 발급:
 - 보건소나 구청에 까지 허가할 필요없음. 현재 조산소나 산부인과에서 허위증명서 발급하고 있는 상황임.
- 입양아의 가정법원판결로 성은 바꿀수 있으나 이를은 바꿀수 없은 현실임. 따라서 양부모에 의해 이름도 바꿀수 있도록 개정안이 고려되어야 함.

- 입양기관에서 보육시 신생아로 부터 6개월간 아무런 문제없음. 이 기간동안 입양 기관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국내입양 적격여부심사
 - 장애증증 판단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사료됨. 어느 정도를 종종으로 판단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불법 입양알선 규정조항
 - 이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됨. 정부에서 홍보매체를 통하여 병원의 의사등 관련인들의 사회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사료됨.
- 주택, 세계지원등의 특혜문제:
 - 정확한 지원금의 실질적 상한가 지정이 도움이 됨. (예: 주택이주금 지원이 1천 만원이나 현실적으로는 부족함. 복수지원(이주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는가)의 기회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시 됨.)
- 입양발생예방:
 - 미혼모나 이혼모의 유기아동이 대부분이나 한국의 제도상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 친모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정부가 이를 집단에 대해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좋겠음.
- 입양대상 아동의 통합 및 관리제도의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아동의 복지차원에서 공동기관 활동으로 양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음.

<김득린 아동복지시설협회 회장>

- 요보호시설대표자로서 정부 및 개인들, 기관, 특히 입양시설에게 감사를 표시함.
- “고아”라는 호칭에 거부감 있음. 원칙적으로 자기 나라·국토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함.
- 입양수의 감소문제는 출산력 저하가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1968~1993년 국내입양 약 5만명 (93년 1,154명)
 - 1968~1993년 국외입양 약 13만명 (93년 2,290명, 92년보다 245명 증가)
 - 출산력 저하와 벼려진 아동의 수가 격감한 이유라고 생각됨.
- 아동보호시설이 없지 않음:
 - 1993년 현재 287개 시설수
 - 보사부 인정 정원수 25,155명
 - 현재 입소 아동수 18,702명
 - (93년 입소 2,241명 퇴소 3,800명)
 - 대상입양아동의 부족. 93년의 경우 34명 희망, 12명만 입양되었음. 입양 신청자 중 22명은 자격심사에 걸렸음.
- 보호시설에 대해 기존의 고아원이라는 시각을 벼려달라는 호소. 현 보호시설의 분위기 및 물질적 보호가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므로 국내입양의 차원에서 아동의 시설보호를 지지함. 선진적인 대리가정제도의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음.

- 아동복지 최우선을 전제로 하여 국내입양>국외입양>시설보호 공식을 반대함. 국내 입양>가정위탁보호>시설보호>국외입양의 공식을 제기함.
- 입양요건에서 부모의 동의와 후견인의 동의를 현행법대로 존속하는 것은 재고해야 함. 자원기능까지 말기면 과거의 아동입양의 악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소화영 훌트아동복지회 사업국장>

1. 해외입양:

- 해외입양은 국가의 체면이나 자존심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임.
- 해외입양문제가 거론된 배경:
 - 88올림픽 당시 미국의 월간지(Progressive)를 시발로 현실보다 증폭된 보도가 전파된 이유임. 한국의 올림픽개최에 대한 미국의 보수세력의 시각이 가진 공격 용 무기였다고 분석됨. 군사정권당시 국회가 정부에 대한 공격용 수단이기도 하였음.
- 훌트복지회의 기본이념은 아동은 가정에서-국내든 국외든 가정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임. 해외입양에 대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실적은 다음과 같음.

- 1958~1993년 사이 훌트	15,000건
동방	7,600건
대한	5,400건
한국사회복지회	3,500건

2. 개정안에 대한 제언:

- 출생신고서류에 입양동의서 반드시 포함하고 있음. 입양동의서에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있음. 따라서 개방입양제도로 전환하면 미혼모의 사항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생김.
- 파양조항:
 - 파양의 기본정신을 삽입하는 것을 희망함.
 - 현재 아동의 복지문제를 제외하고는 파양이 불가능하나 재산문제 때문에 양부모의 고의적인 파양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제재조치도 필요하고 파양시 아동의 재산권 조항을 첨가할 필요 있음.
- 특례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악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망함.
- 입양관련 법칙들이 소액이므로 별로 효과없음. 따라서 상향조정이 바람직함.

<이형용 법원행정처 법제과장>

- 입양아 신고부분에 대하여 친자로 신고하는 경우와 양자로 신고하는 경우 둘다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정시안의 결정시 본인에게 재차 의견을 물으시던지 아니면 호적법으로 결정 요망함.

<김종우 입양가정 어머니>

- 이률을 개칭하는 과정에서 재판기간이 길었음.
- 의료비는 보험혜택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었음. 더구나 장애아였으므로 연령에 적당한 보장구 구입이 특히 힘들었음.
- 주택구입 이주시 은행내규에 따라 1천만원 지원받았으나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미미하였음. 전시적인 행정 처사로 인식됨. 한번 더 이주시 다시 지원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움. 따라서 계속적인 보장이 되도록 지원 기대함.
- 입양조기교육을 촉구함. 건강한 아이는 숫자가 적어서 입양불가능함. 한국사회의 장애아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아동의 상태를 염려하기 때문에 장애아 입양이 적음. 사회의 장애아·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촉구함.

<광주 영아보호소 근무>

- 국내에서 입양된 1,136명을 대상으로 분석중임. 현장 통계를 통하여 정부, 학계, 기관에서 현실을 파악해야 할 것임.
- 아동과 가정의 연결시 비밀과 혈통관계를 증시하므로 양부모만 아는 경우 50%, 양부모와 생부모 동시에 아는 경우 22%, 형제까지 아는 경우 20%, 친척까지 아는 경우는 10% 정도임.
- 입적문제를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입양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실제는 전부 친자로 신고하고 있음. 현실과 괴리된 조항은 지양해야 함.

<김명숙 보사부 가정복지심의관>

- 참석하신 학계, 관계등의 내빈과 시의적절한 공청회를 개최한 보건사회연구원과 특히 입양을 실천하고 계시는 김종우어머니께 치하함.

